
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
일부개정법률안  
심 사 보 고 서

2025. 12.

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: 2025년 6월 12일, 이해민의원 등 12인

나. 회부일자: 2025년 6월 13일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

제428회 국회(임시회)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(2025.

8. 26.) 상정·제안설명·검토보고·대체토론·소위원회

제429회 국회(정기회) 제2차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(2025.

11. 18.) 상정·축조심사

제429회 국회(정기회) 제3차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(2025.

11. 19.) 상정·축조심사·의결(대안반영폐기)

제429회 국회(정기회) 제17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(2025.

11. 24.) 상정·대체토론·소위심사보고·찬반토론·의결(대안반영폐기)

## 2. 제안설명의 요지

(제안설명 : 이해민의원)

현행법에 따르면 사이버 침해사고가 발생할 경우,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(이하 ‘과기부 장관’)은 민·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하여 사고 원인을 분석하고, 관련 사업자에게 자료 제출 및 현장 조사에 협조할 것을 요구할 수 있음.

그러나 사업자가 과기부 장관의 협조 요청을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등 불성실한 태도로 임하더라도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외에는 실질적인 제재 수단이 없음. 이 때문에 국민 피해 및 구제와 직결되는 조사의 실효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.

이에 장관이 사업자의 자료 제출 거부나 현장 조사 방해 등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, 조사의 실효성을 담보하고, 사고 은폐나 축소 시도 등을 막고자 함(안 제48조의7 신설 및 제76조제3항제11호의3·제12호 삭제).

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

(수석전문위원 이복우)

- 「행정기본법」은 입법목적이나 입법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률에 이행강제금의 연간 부과 횟수나 횟수의 상한을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하고 있는데<sup>1)</sup>,

개정안에는 이행강제금의 연간 부과 횟수나 횟수의 상한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침해사고의 횟수를 예단하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부과 횟수 등에 대한 일정한 기준을 명시할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.

- 또한, 현행 제48조의4 제6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자료 제출 요청 및 민·관합동조사단의 원인조사 대상을 ‘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’로 하고 있으므로, 개정안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도 이에 맞추어 ‘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’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.

#### 4. 대체토론의 요지

없 음

#### 5. 소위원회 심사내용

(소위원장 김 현)

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되, 개정안의 내용을 반영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함.

- 
- 1) **제31조(이행강제금의 부과)** ① 이행강제금 부과에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는 이행강제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한다. 다만, 제4호 또는 제5호를 규정할 경우 입법목적이나 입법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.

5. 연간 부과 횟수나 횟수의 상한

행정기본법 시행령

**제8조(이행강제금의 부과 등)** ① 법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”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.

1. 이행강제금 부과 금액이 합의제행정기관의 의결을 거쳐 결정되는 경우
2. 1일당 이행강제금 부과 금액의 상한 등 법 제31조제1항제5호에 준하는 이행강제금 부과 상한을 이행강제금 부과에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서 정하는 경우

## 6. 찬반토론의 요지

없 음

## 7. 심사결과

대안반영 폐기